

인수거절 후, 납입보험료 반환 전 화재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성남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선임조사역

1. 머리말

보험계약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통상적인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먼저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할 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가입 권유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초회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이 과정을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가 접수되면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적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낙부통지를 한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보험가입을 승낙하는 경우 별도의 승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같음하며, 보험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험가입 거절사실과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례

경기도 수원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정씨는 1999. 5. 10 甲손해보험회사 乙지점 丙대리점 대표 이씨와 보험가입에 대하여 상담한 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정씨, 보험기간은 3년, 보험목적물은 단란주점 내의 시설 및 집기, 보험가입금액은 시설 1억원, 집기 5천만원인 총 1억 5천만원으로 하여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업안전종합보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고, 제1회 분 보험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손해보험회사 乙지점의 담당자가 보험목적물을 조사하여 보험회사 본점에 실사보고를 하였고 피고회사는 실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기로 결정, 같은 해 5. 29 이씨에게 인수거절을 통보하고 5. 31. 이씨의 계좌로 기 지급된 보험료를 송금하였다. 이씨는 같은 해 6. 2. 정씨의 처인 박씨에게 보험회사의 보험인수거절 의사를 전하였고, 6. 3. 정씨와 통화하여 위 인수거절의사를 통보하는 한편 기지급된 보험료를 6. 5에 정씨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6. 5. 05:00경 이 사건 주점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시설과 집기가 소실되었다. 정씨는 위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3. 보험계약의 성립

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638조의2,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체결에서는 의사표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먼저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그 청약에 대응하여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구별이 아니고 시간적 선후에 따른 구별이다.¹⁾

(1) 청약

가) 청약의 의의

청약은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 또는 화재보험을 계약하겠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이른바 법률행위가 아니며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나)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보험계약에서 청약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상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와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여 영업소 등에서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전산망에 입력을 한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27조). 다만,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하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분야에서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Cooling-Off Period(청약철회 유보기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각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화재보험계약에서도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다) 청약의 승낙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효력을 청약의 실질적 효력, 즉 승낙적격이라고 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에 대하여는 그 기

간 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나가면 승낙적격을 잃게 되고,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민법 제528조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승낙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비록 그 거절이 승낙기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약이 승낙적격을 잃게 된다.³⁾

(2) 승낙

(가) 승낙의 의의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청약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란 있을 수 없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으로 합치하지 아니하는 승낙, 즉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법 제534조)

(나)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한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하였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청약자가 연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

로 본다.(민법 제528조 제3항)

2)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민법 제528조)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한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승낙여부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30일 내에 그 상당액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인보험계약에서 신체검사를 요하는 경우, 위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가 위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3) 연락된 승낙의 효력

이미 정해진 승낙기간 혹은 상당한 기간 이후에 도달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가 승낙으로서 효력을 지니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민법 제530조)

4) 변경된 승낙의 효력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자체에 대해서는 거절한 것이지만 승낙자가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그 조건이나 변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청약의 동일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문제이나,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돌릴 수 있다.

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말한다.

관련 판례

예금계약은 예금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1996.1.26. 95다26919판결)

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즉 객관적·주관적으로 합치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컴퓨터를 10만원에 팔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乙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甲에게 그 컴퓨터를 10만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가 그것이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 청약이 각각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4. 사례의 해결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

여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는 바,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1회분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인 1999. 6. 2.과 6. 3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승낙거절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5. 보험자의 승낙고려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

가. 문제의 제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30일 내에 승낙여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승낙고려기간 내에 마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론상으로는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직 승낙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아직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청약 후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호

(1) 상법 규정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

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2) 제도적 취지

이 조항의 취지는 부보가능성이 있는 보험가입자측이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믿고 안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종래 보험계약의 낙성계약성을 크게 완화하여 보험자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측의 합리적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보험실무상 주로 생명보험에서 종래 약관상 인정되던 것을 모든 보험에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보험가입자측에 대한 파격적인 배려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 할 수 있다.

(3) 요건

(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것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여야 한다.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란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고, ‘보험료의 일부’란 분할납입 보험료에서 초회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 납입여부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상보험계약이나 대납약정의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 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

(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것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단체에 가입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현저히 높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청약거절 사유의 유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판단하므로 청약서 기재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청약당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효과

상기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의 승낙 전 보험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 즉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단서) 

주)

- 1)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907면
- 2)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제5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제8조, 제17조 등 소비관련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경솔하게 매수 또는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로 하여금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재고의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3)곽윤직, 채권각론(1997년판), 69면
- 4) 김성태, 보험법강론(2001), 182면